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9744호, 2023. 10. 24. 공포, 2023. 10. 24.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다른 이첩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재이첩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 1)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첩기관에서 제외되어, 해양경찰청은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이첩받지 못하고, 경찰청 등 다른 이첩기

관으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아 왔음.

- 2) 해양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이첩받지 못함에 따라 사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어 범죄피해자보호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증거 훼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음.
- 3) 2023. 10. 24.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청이 추가되었음.
- 4) 이에 따라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절차 등을 정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군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하고, 관계 서류 등을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이 재이첩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생 략
- 3) 행정규제 : 생 략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28조제3항”을 “법 제228조의3제1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을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이나 경찰관서”를 “,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로, “송부할 수 있다”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u>법 제228조제3항</u> 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또는 <u>경찰청</u> 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제7조(사건 이첩) ① ----- ----- ----- ----- ----- ----- <u>법 제228조제3항</u> ----- -----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u> ----- ----.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삭 제>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u>대검찰청 또는 경찰청</u> 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u>이나 경찰관서</u> 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u>송부</u> 할 수 있다.	③ ----- ----- --- <u>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u> ----- ----- --, <u>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u> ----- <u>송부</u>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군	<삭 제>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양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
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811